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

※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[]에는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신고번호		(지방고용노동관서명) - 호		처리기간	7 일
구 분	[] 건축물	위치(소재지)		건축물등록번호	
	[] 설비	용도		건물명(설비명)	
	[] 유치원 또는 학교	건축물수		구조	
	[] 정비사업	세대수		연면적	
	[] 기타				
소유자		성명 주소		전화번호	
석면 해체·제거 업자	업체명(상호)		대표자 성명		
	고용노동부 등록번호	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
작업장		공사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		전화번호	
해체 사유 및 기간		해체사유		해체기간	
		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석면함유 자재(물질)의 종류 및 면적	종 류		면적(㎡)·부피(㎥)·길이(m)		
	분무재(뿜칠재)				
	내화피복재				
	천장재				
	지붕재				
	벽재(벽체의 마감재)				
	바닥재				
	파이프보온재				
	단열재				
	개스킷				
기타					
현장책임자		성명		전화번호	
작업근로자 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	주소	전화번호

※ 석면함유자재(물질)의 종류 및 면적의 내용이나 작업근로자가 많을 경우 별첨하여 제출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고용노동청장(지청장) 귀하

첨부서류	1.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.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서(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합니다) 1부 3. 석면조사 결과서 1부 4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별표 28에 따른 인력,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유의사항

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·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√ 표시를 합니다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·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√ 표시를 합니다.
-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·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타에 √ 표시를 합니다.
- 현장책임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86조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제로 석면해체·제거작업 현장을 총괄·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.
- 해체기간, 석면함유자재(물질)의 종류 및 면적, 현장책임자,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78호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석면함유자재(물질)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(물질)의 종류별 석면해체·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

공지사항
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신고인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